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대한의사협회장  
(경유)  
제목 업무 협조요청

---

1.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귀 협회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 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·오남용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(조제·투약 등)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,
  -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류 오·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하고, 추적관리를 통해 처방개선을 관리하는 '사전알리미'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\* 마약류 오·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를 대상으로 서면경고 및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는 제도로, 의사가 제출한 처방사유 등 근거자료에 대한 타당성 인정 시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
3. 이와 관련하여, 그 간의 사전알리미 중 의사 처방 근거자료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주의 필요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등 업무수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니, 귀 회원 및 비회원께 안내하여 주시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 주의사항 >

**1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투약보고 시 환자에게 투약한 실사용량 및 정확한 사용 후 폐기량 입력 필요**

- ※ (사례)① 처방·투약량이 0.5앰플일 때, 실사용량과 달리 날개단위(1 앰플) 기준으로 보고
- ② 처방·투약량이 0.5앰플일 때, 폐기량 0.5앰플이 있음에도 사용 후 폐기량을 '0'으로 보고 등

**2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해당 질병분류코드 모두 입력 필요**

- ※ (사례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한 질병분류코드와 진료기록부 미일치 등 (질병분류코드 복수기재 누락 등)

**3) 마약류 폐기 시 행정처리 절차 철저히 준수 필요(사고마약류 등 폐기 시,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을 한 후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고, 폐기한 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필요)**

- ※ (사례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누락 등

4) 사전알리미 등 오남용 의심사례 점검 대비 진료기록부에 시술명, 시술시간 등 상세기재 필요

※ (사례) 실제 투약량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자료 미보유 등

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---

약무주사 **황재양** 사무관 **한원선** 기술서기관 **김영주** 전결 2023. 3. 8.

협조자

시행 마약관리과-1307 (2023. 3. 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관리과 / 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895 팩스번호 043-719-2890 / whgdkg@korea.kr / 비공개(5)